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세법 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규정에 따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한 것으로
-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의 불이익에 따른 형평성 유지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를 감면조치함은 지역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상위 법령준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, 개선 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군 상설시장도 소급적용 되는지
- 답 :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1항 규정에 의거 사업승인을 받은 1·2차 사업은 제외되고 앞으로 시행하는 3차사업 부터 해당된다고 하였음.
- 문 : 부칙에 유효기간이 '97. 12. 31 까지로 하였는데 기간도래가 가까워 얼마남지 않았는데 조례개정 실효성이 있는가
- 답 : 유효기간은 '97. 12. 31 까지이며 기한이 넘으면 상부 준칙에 의거 기한연장 조례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7. 9. 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